

2015년 1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

이은형

2015. 6

요 약

- **[2015년 1/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4/4분기보다 10.5p 상승한 67.1로 조사됨. 동일 기간에 조사된 타 기관들의 경기실사지수(BSI)들도 대부분 4/4분기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2/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 전망]**은 65.7로 이번 분기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건설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자칫 정체될 우려가 제기된 것에 영향 받은 것으로 판단됨
- **[전문건설업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46%)'에 대한 응답비율이 지난 분기보다 7%p 증가했고, 'SOC 등 공공발주의 확대(33%)'는 종전 수준을 유지함. '입·낙찰제도의 개선(12%)'은 6%p 감소, '민간투자 활성화(7%)'는 7%p 감소, '부동산규제완화(0%)'의 응답은 없었음.
- **[기업경영상의 주요 애로사항]**은 '수주부진(36.4%)', '인력난·인건비 상승(23.6%)', '자금부족(11.4%)', '경쟁심화(7.9%)'의 순으로 지목됨.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인력난·인건비 상승'의 응답비율이 지난 분기보다 더욱 늘어난 2순위로 나타났다는 것임
- **[자금사정지수]**는 지난 분기보다 하락했으며 다음 분기에도 계속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자금조달방법]**은 여전히 '대표자 개인자금(50%)'과 '금융기관 차입(30%)'이 다수 응답으로 조사됨
- **[공사수주]**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4/4분기보다 크게 상승함. **[공사대금 수령 평균소요일수]**는 원도급공사 20일, 하도급공사 37일이었으며 **[수령 형태]**는 '현금(63%)'과 '어음대체결제수단(15%)'이 대부분을 차지함
- **[공사대금수금지수]**는 4/4분기보다 크게 상승했으나 다음 분기에는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수령어음 평균만기일]**은 원도급(대부분 60일 이내에 수령)에 비해 하도급의 평균만기일이 더욱 긴 일반적인 결과로 조사됨. **[수령어음의 현금화방법]**은 '만기보유(36%)'와 '시중은행 할인(21%)'이 주를 이루며 그 다음은 '자재·장비비 등으로 유통(7%)'한다는 응답이었음. '제2금융권 할인(0%)'과 '사채시장 할인(0%)'비율은 없었음

- **[기술·기능인력 수급지수]**는 4/4분기보다 하락, **[인건비지수]**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양쪽 모두 그간의 상승세가 꺾임. **[자재·장비수급지수]**는 소폭 하락 **[자재비지수]**는 4/4분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남.
- **[이중계약서 작성]**과 **[하도급계약시 부당감액]**사례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건설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은 4/4분기보다 늘어난 86%로 집계됨. **[전자입찰 하도급공사 수주시 재입찰 경험]**은 응답 업체의 대부분인 85%가 1~2회라고 응답함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정기간보다 길다는 응답은 16.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전체 응답자의 44%가 미수령했으며 주된 사유는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하도급 대금 대금직불현장(38%)’ 과 ‘이유모름(41%)’으로 나타남. **[계약이행보증서/하자보 증서 발급기관]**을 지정해 강요받은 경우는 10%, **[원도급자의 무리한 하자보수요구]**는 무려 18%가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
- 1/4분기 조사에서 나타난 불공정거래의 사례들을 종합한 결과는 <요약표-1>처럼 낮은 공사계약금액 및 부당한 공사비 감액, 추가시공 및 증액분의 미지급, 과도한 하자책임전가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요약표-1> 불공정거래의 구체적 피해사례

발생단계	불공정거래 사례
발주자/원도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를 물품납품/자재구매로 발주 - 민간입찰 공동주택의 경우 내정된 특정업체를 위한 입찰공고
공사수주 및 계약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율보다도 낮은 공사금액으로 계약을 강요 - 건설공사가 아닌 물품납품/자재구매로 계약을 요구 - 원도급사가 특정인을 시공에 참여토록 한 뒤 관련 비용 전가
시공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내역서에 없거나 임의 변경한 공정을 시공/재시공 유도 - 불가피한 공사비 증액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증액불허 - 원도급사의 현장경비 등을 모두 하도급사에 전가 - 타 공정에서 비롯된 하자를 공동보수토록 강요
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대금의 지연지급,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 추가공사 등의 공사대금을 미지급(공사비에 미반영) - 무리한 하자요구를 내세워 공사비 삭감을 요구 - 불합리한 공사대금 삭감 -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보수요청

I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 전문건설업이 건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특히 건설시공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건설업의 실태와 기업경영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실태 및 기업경영 애로사항 등을 분기별로 설문을 통해 시의 적절하게 포착함. 그리고 경제통계로 포착되지 않고 시계열 자료를 통한 장기분석이 요구되는 일부 항목은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¹⁾를 활용함
- 원·하도급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수행된 본 조사는 향후 경기전망, 제도개선 및 정책건의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전문건설업의 대내외 위상 제고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임

2. 조사내용

- 2015년도 1/4분기의 전문건설업 실태와 기업경영상의 애로점을 조사하기 위해 총 8개 항목, 41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함
 - 건설경기전망, 경영일반 및 자금사정, 공사수주, 공사대금 수령, 하도급 불공정거래, 기술·기능인력 수급, 자재·장비 수급, 불공정거래의 피해 사례로 구성됨

3. 조사대상 및 방법

- 대한전문건설협회의 16개 시·도회에 가입한 주요 전문건설업체에 재직 중인 308명의 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전문건설업 실태 및 현황조사를 위한 자계식 설문조사를 실시함

1)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연구 자료를 이용함

- 설문지를 배포한 308개사는 수도권 업체가 99개사(32.1%), 지방권 업체는 209개사(67.9%)로 구성되며, 기업규모와 본사 소재지(수도권·지방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함
- 설문지를 배포한 308개사 중 70개사(유효회수율: 22.7%)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1/4분기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분석에 활용됨

<표-1> 설문조사 내용

구 분	조 사 내 용
건설경기(전문건설업) 전망	①경기전망 ②경기활성화 대책
경영일반 및 자금사정	③기업경영 애로사항 ④자금사정 전망 ⑤자금조달 방법
공사수주	⑥공사수주 전망
공사대금 수령	⑦대금수령 소요일 ⑧수령형태 ⑨수금전망 ⑩수령어음 평균만기일 ⑪어음의 현금화 방법/할인율
하도급 불공정거래	⑫이중계약서 작성경험 ⑬불공정 특약조항 유무 ⑭부당감액 피해사례 ⑮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유무 ⑯전자 입찰시 재입찰 ⑰하자담보책임기간 ⑱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수령 ⑲지급보증서 미수령 사유 ⑳계약이행보증서/하자보증서 발급기관 지정 ㉑하도급계약이행보증을 초과강요 ㉒하자보수보증을 초과강요 ㉓무리한 하자보수요구 ㉔공상처리/비용
기술·기능인력 수급	⑫기술·기능인력 수급전망 ⑮인건비 전망
자재·장비 수급	⑲자재·장비 수급전망 ⑳자재가격 전망 ㉑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㉒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㉓지급보증서 미발급사유 ㉔계약이행보증서 수령 ㉕계약이행보증서 미수령사유 ㉖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제도의 개선점
불공정거래의 피해사례	㉗발주자/원도급자로부터의 부당피해 ㉘공사수주 및 계약단계 ㉙시공단계 ㉚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단계 ㉛유지관리단계 ㉜자재·장비업자로부터의 부당피해 ㉝기타 건설공사 수행 관련

II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및 분석

1. 2015년 1/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평가 및 2/4분기 전망

- [2015년 1/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4/4분기보다 10.5p 상승한 67.1로 조사됨. 동일 기간에 조사된 타 기관들의 경기실사지수(BSI)들도 대부분 4/4분기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2>
 - 전문건설업은 지난 4분기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상승세를 유지했으며, 타 기관 조사치 역시 대부분 지난 2014년 2분기부터 이어온 상승세를 유지함. 이는 이번 1분기의 SOC예산 집행과 함께 전년 동기보다 늘어난 주택착공물량과 건축 인허가 면적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임
 - 실제로 건설업계의 성수기인 3월 이후로 철근 등의 기초자재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음. 또한 추후 이들 공사의 진척에 따라 내부 마감재 등의 자재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로 지난 분기의 조사시점에는 2015년을 기점으로 건설업의 장기불황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와 함께 금년의 건설투자가 최대 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는 의견도 있었음
- 하지만 이 같은 상승세는 SOC예산집행의 지속실행여부 등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이번의 조사결과 역시 인위적인 경기부양책, 즉 민간부문의 수주확대와 SOC중심의 공공예산집행 등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임

<표-2>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실적추이 및 전망

	2013년 4/4분기	2014년 1/4분기	2014년 2/4분기	2014년 3/4분기	2014년 4/4분기	2015년 1/4분기	2015년 2/4분기
경기실적(BSI)	47.4	62.5	57.7	49.4	56.6	67.1	65.7(전망)

-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의 건설투자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7.4%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또한 건설업 성장을 역시 2%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분기에 KDI(한국개발연구원)는 금년의 건설투자 전망치를 기존의 4.7%에서 2.9%로 하향조정했는데 이는 주로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SOC예산 집행실적둔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짐. 즉 건설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설수주증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건설투자의 회복세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음
- **[2015년 2/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 전망]**은 65.7로 이번 분기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건설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자칫 정체될 우려가 제기된 것에 영향 받은 것으로 판단됨 <표-2>
- 종전의 2015년도 경제성장을 예상치는 우리 정부가 3.8%, IMF와 OECD는 각각 4.0%와 3.8%, 주요 연구기관들은 3% 중후반이었음. 그러나 현재 한국은행과 IMF는 이를 3.1%로 하향조정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2%대 후반으로 낮춰 잡고 있음
- 이 때문에 정부는 금년 하반기에 최대 2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금년의 경제성장률을 3%대로 유지할 계획임. 그러나 마찬가지로 예산집행결과에 따라 건설업계가 체감하는 경기상황에 차이가 있을 것임
- **[전문건설업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46%)’에 대한 응답비율이 지난 분기보다 7%p 증가했고, ‘SOC 등 공공발주의 확대(33%)’는 종전 수준을 유지함. ‘입·낙찰제도의 개선(12%)’은 6%p 감소, ‘민간투자 활성화(7%)’는 7%p 감소, ‘부동산규제완화(0%)’의 응답은 없었음 <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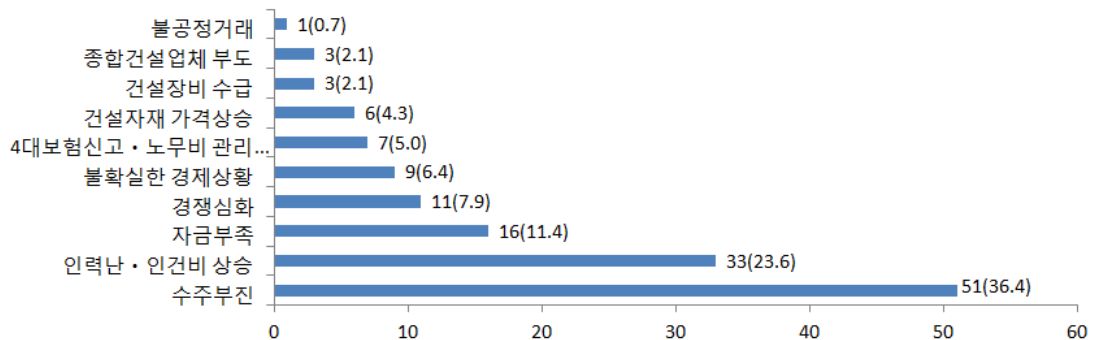
<표-3> 전문건설업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

	'14. 1분기	'14. 2분기	'14. 3분기	'14. 4분기	'15. 1분기
공공발주 확대	24 (30)	19 (26)	23 (30)	26 (34)	23 (33)
민간투자 활성화	10 (12)	5 (7)	3 (4)	11 (14)	5 (7)
부동산 규제 완화	1 (1)	0 (0)	2 (3)	2 (3)	0 (0)
입·낙찰제도 개선	15 (19)	13 (18)	12 (16)	24 (18)	8 (12)
지역경제 활성화	28 (35)	34 (47)	34 (45)	30 (39)	32 (46)
기 타	3 (4)	1 (1)	2 (3)	1 (1)	1 (1)

2. 경영일반 및 자금사정

- [기업경영상의 주요 애로사항]은 '수주부진(36.4%)', '인력난·인건비 상승(23.6%)', '자금부족(11.4%)', '경쟁심화(7.9%)'의 순으로 지목됨[그림-1]
 -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인력난·인건비 상승'의 응답비율이 지난 분기보다 더욱 늘어난 2순위로 나타났다는 것임. 동 항목은 그간 응답수가 적은 하위 항목인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수주부진'과 함께 이제는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성과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사수행단계에서의 공사원가가 주요 사안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단위: 응답수,%)



[그림-1] 전문건설업 경영애로사항(2015년 1/4분기)

- [자금사정(자금조달)지수]는 62.9로 지난 분기보다 하락했으며 다음 분기에는 60.2로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표-4>

- 참고로 최근 들어 전문건설업체들의 자금상황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원도급사의 원가절감분을 전문건설업체에게 전가하는 유형의 편법발주같은 불공정거래임. 이 때문에 종전처럼 단순히 공사수주물량의 규모 만으로는 전문건설업체의 자금사정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자금조달방법]**은 ‘대표자 개인자금(50%)’과 ‘금융기관 차입(30%)’이 전체 응답의 무려 80%를 차지했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전문건설업체들의 자금조달경로가 그리 다양하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 것임 <표-5>

<표-4> 전문건설업 자금조달지수 추이 및 전망

	2013년 4/4분기	2014년 1/4분기	2014년 2/4분기	2014년 3/4분기	2014년 4/4분기	2015년 1/4분기	2015년 2/4분기
자금조달	71.1	68.8	57.7	49.4	68.7	62.9	60.0(전망)

<표-5> 전문건설업체의 자금조달방법 (건,%)

	'14. 1분기	'14. 2분기	'14. 3분기	'14. 4분기	'15. 1분기
금융기관 차입	23 (28)	21 (30)	24 (32)	26 (31)	21 (30)
사채시장 조달	3 (4)	1 (1)	1 (1)	3 (4)	1 (1)
회사채 발행	5 (6)	0 (0)	2 (3)	4 (5)	4 (6)
상생협력펀드 활용	0 (0)	0 (0)	1 (1)	0 (0)	0 (0)
대표자 개인 자금	34 (42)	42 (59)	36 (48)	42 (50)	35 (50)
보유자산 매각	7 (9)	4 (6)	4 (5)	2 (2)	2 (3)
기타	9 (11)	3 (4)	7 (9)	7 (8)	7 (10)

3. 공사수주와 공사대금 수금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4/4분기보다 큰 폭으로 상승함 <표-6>
- 기업규모별로 보면 종전과 다름없이 대형업체들의 원도급 공사물량지수에 대한 평가가 중소형업체보다 크게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지방보다 큰 폭으로 높게, 업종별로는 건축중심업체가 토목중심업체보다 크게 높았음

- 하도급 공사물량지수에서는 원도급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역시 대형업체의 지수가 가장 높고 중소형업체와의 격차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원도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높게, 업종별로는 건축 중심업체가 토목중심업체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참고로 통계청의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건설수주와 건설투자가 급증했던 충남 지역의 경우 건축수주의 증가율이 토목수주보다 크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수도권보다 공사물량지수가 낮은 지방이라고 해도 개발소재가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도 감안해서 조사결과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

<표-6> 전문건설업 공사물량지수 추이 및 전망

	2013년	2014년	2014년	2014년	2014년	2015년	2015년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원도급	54.1	62.5	43.7	44.2	60.2	71.4	65.7(전망)
하도급	60.0	62.5	46.5	33.8	55.4	61.4	62.9(전망)

- [공사대금 수령 평균소요일수]는 지난 분기보다 감소해 원도급공사가 20일, 하도급공사가 37일로 나타남<표-7>. [공사대금의 수령 형태]는 '전액 현금(63%)', '어음대체결제수단(15%)', '현금+어음(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음대체결제수단의 경우 지난 4분기부터 응답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 <표-8>

<표-7> 공사대금 수령 평균소요일수 (일)

	'14. 1분기	'14. 2분기	'14. 3분기	'14. 4분기	'15. 1분기
원도급 공사	28	23	22	24	20
하도급 공사	37	38	42	42	37

<표-8> 공사대금의 수령형태 (건,%)

	'14. 1분기	'14. 2분기	'14. 3분기	'14. 4분기	'15. 1분기
전액 현금	46 (61)	48 (71)	47 (69)	47 (63)	39 (63)
전액 어음	1 (1)	0 (0)	0 (0)	0 (0)	2 (3)
현금 + 어음	13 (17)	14 (21)	9 (13)	8 (11)	5 (8)
어음대체결제수단	3 (4)	4 (6)	3 (4)	12 (16)	9 (15)
기타	13 (17)	2 (3)	9 (13)	8 (11)	7 (11)

- **[공사대금 수금]**은 원도급 공사대금지수가 90.9(86.4점→90.9점)로 증가, 하도급 공사대금지수는 83.3(67.7점→83.3점)으로 4/4분기보다 크게 상승했으나 다음 분기에는 모두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원/하도급의 구분 없이 전문건설업 전체로도 1/4분기 지수는 90.0으로 상승했으나 다음 2/4분기에는 81.4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표-9>
- 공사대금수금지수는 2014년 3분기 이후로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여옴. 그러나 전문건설업체들이 수령하는 공사대금의 약 20%가 어음이라는 기존의 조사 결과와 함께 때로는 수주물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대금수금의 어려움도 함께 감소하는 응답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표-9> 전문건설업 공사대금수금지수 추이 및 전망

	2013년 4/4분기	2014년 1/4분기	2014년 2/4분기	2014년 3/4분기	2014년 4/4분기	2015년 1/4분기	2015년 2/4분기
공사대금수금 (원·하도급 전체)	93.3	66.7	78.9	66.2	80.7	90.0	81.4(전망)

- **[수령어음 평균만기일]**은 원도급은 '30일 이하(72%)', '31~60일(22%)'로 응답 업체의 약 94%가 60일 이내의 만기어음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남. 하도급공사의 평균만기일도 '30일 이하(45%)', '31~60일(39%)'이 대부분을 차지함 <표-10, 표-11>

<표-10> 원도급공사 수령어음의 평균만기일 (건, %)

	'14. 1분기	'14. 2분기	'14. 3분기	'14. 4분기	'15. 1분기
30일 이하	19 (50)	12 (48)	15 (48)	23 (49)	23 (72)
31~60일	10 (26)	6 (24)	10 (32)	18 (38)	7 (22)
61~90일	9 (24)	6 (24)	5 (16)	5 (11)	1 (3)
91~120일	0 (0)	1 (4)	1 (3)	1 (2)	1 (3)
120일 초과	0 (0)	0 (0)	0 (0)	0 (0)	0 (0)

<표-11> 하도급공사 수령어음의 평균만기일 (건, %)

	'14. 1분기	'14. 2분기	'14. 3분기	'14. 4분기	'15. 1분기
30일 이하	13 (30)	10 (33)	5 (13)	20 (41)	14 (45)
31~60일	17 (40)	8 (27)	20 (53)	19 (39)	12 (39)
61~90일	7 (16)	7 (23)	8 (21)	9 (18)	2 (6)
91~120일	5 (12)	5 (17)	5 (13)	1 (2)	1 (3)
120일 초과	1 (2)	0 (0)	0 (0)	0 (0)	2 (6)

- [수령어음의 현금화방법]은 '만기일까지 보유(36%)', '시중은행 할인(21%)', '자재·장비비 등으로 유통(7%)'의 순으로 다수응답이 조사됨.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제2금융권 할인(0%)'과 '사채시장 할인(0%)'의 응답은 없었음 <표-12>

<표-12> 수령어음의 현금화 방법 (건, %)

	'14. 1분기	'14. 2분기	'14. 3분기	'14. 4분기	'15. 1분기
시중은행 할인	8 (20)	12 (46)	7 (19)	6 (15)	6 (21)
제2금융권 할인	1 (2)	0 (0)	0 (0)	0 (0)	0 (0)
사채시장 할인	0 (0)	0 (0)	0 (0)	0 (0)	0 (0)
자재장비비 등으로 유통	4 (10)	3 (12)	4 (11)	5 (13)	2 (7)
만기일까지 보유	15 (37)	11 (42)	19 (53)	18 (46)	10 (36)
기타	13 (32)	0 (0)	6 (17)	10 (26)	10 (36)

4. 기술·기능인력 및 자재·장비 관련

- [기술·기능인력 수급과 인건비지수]는 인력수급지수는 4/4분기보다 하락, 인건비지수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양쪽 지수 모두 그간의 상승세가 꺾임 <표-13>
 - 인력수급지수가 통상적으로는 90전후를 유지하며 때로는 100이상의 수치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 3분기 이후로는 줄곧 80전후를 기록하고 있음. 더구나 이번 조사결과는 2013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향후 10년간 건설업 등 단순 종사업의 취업자 수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건설업분야에서 인건비는 다른 원가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정이 용이한 부분이지만 건설분야가 여전히 높은 업무강도²⁾에도 불구하고 낮은 처우를 받는 일자리로 간주되는 현실에서는 인력수급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방안을 찾기란 쉽지 않음

<표-13> 전문건설업 인력수급 및 인건비지수 추이 및 전망

	2013년 4/4분기	2014년 1/4분기	2014년 2/4분기	2014년 3/4분기	2014년 4/4분기	2015년 1/4분기	2015년 2/4분기
인력수급	76.4	83.8	83.1	84.4	85.5	81.4	77.1(전망)
인건비	40.4	52.5	38.0	51.9	55.4	54.3	57.1(전망)

- [자재·장비수급과 자재가격지수]는 <표-14>과 같이 자재·장비수급지수는 소폭 하락, 자재비지수는 4/4분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공사물량의 증가와 함께 자재업체와 건설업체간의 가격조정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2) 더구나 건설현장은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사업장이기도 함

<표-14> 전문건설업 자재·장비 수급 및 자재비지수 추이 및 전망

	2013년 4/4분기	2014년 1/4분기	2014년 2/4분기	2014년 3/4분기	2014년 4/4분기	2015년 1/4분기	2015년 2/4분기
자재·장비수급	111.1	96.3	97.2	100.0	98.8	95.7	94.3(전망)
자재비	39.6	57.5	40.8	49.4	49.4	49.4	64.3(전망)

5. 하도급 불공정거래

- [이중계약서 작성경험]은 99%의 응답 업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2014년 2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비율이 증가함<표-15>. [하도급계약시 불공정 특약조항 설정]은 94%가 없는 것으로<표-16>, [하도급계약시 부당감액 피해]는 95%의 업체가 없다고 응답함<표-17>. 그러나 이중계약서 작성과 불공정 특약, 부당감액에 따른 피해사례가 건설현장에서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표-15> 이중계약서 작성경험 유무 (건, %)

	'14. 1분기	'14. 2분기	'14. 3분기	'14. 4분기	'15. 1분기
경험있음	3 (4)	11 (16)	6 (8)	5 (6)	1 (2)
경험없음	72 (96)	58 (84)	67 (92)	77 (94)	66 (99)

<표-16> 하도급계약시 불공정 특약조항 유무³⁾ (건, %)

	'14. 1분기	'14. 2분기	'14. 3분기	'14. 4분기	'15. 1분기
경험있음	-	-	3 (4)	2 (3)	4 (6)
경험없음	-	-	68 (96)	77 (98)	63 (94)

<표-17> 하도급계약시 부당감액 피해 (건, %)

	'14. 1분기	'14. 2분기	'14. 3분기	'14. 4분기	'15. 1분기
경험있음	4 (5)	1 (17)	8 (11)	10 (13)	3 (5)
경험없음	71 (95)	53 (83)	68 (89)	67 (87)	62 (95)

3) 본 조사문항은 2014년 3분기부터 추가된 것임

-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는 응답업체의 86%가 사용중이라고 응답했으나 미사용하거나 수정·변경 사용한다는 응답도 각각 5%와 8%로 조사됨 <표-18>

<표-18>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건, %)

	'14. 1분기	'14. 2분기	'14. 3분기	'14. 4분기	'15. 1분기
사용	43 (61)	54 (82)	59 (82)	55 (71)	55 (86)
미사용	6 (8)	5 (8)	6 (8)	5 (6)	3 (5)
수정·변경사용	4 (6)	6 (9)	5 (7)	6 (8)	5 (8)
기타	18 (25)	1 (2)	2 (3)	11 (14)	1 (2)

- [전자입찰 하도급공사 수주시 재입찰 경험]은 응답 업체 of 대부분인 85%가 1~2회, 3회가 6%, 4회 이상은 없었음 <표-19>

<표-19> 전자입찰 재입찰 경험횟수 (건, %)

	'14. 1분기	'14. 2분기	'14. 3분기	'14. 4분기	'15. 1분기
1회	17 (39)	11 (35)	15 (45)	25 (61)	22 (67)
2회	11 (25)	10 (32)	9 (27)	6 (18)	6 (18)
3회	4 (9)	3 (10)	5 (15)	2 (6)	2 (6)
4회 이상	0 (0)	1 (3)	2 (6)	1 (3)	0 (0)
기타	12 (27)	6 (19)	2 (6)	7 (21)	3 (9)

- [하도급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법정기간보다 길다'는 응답이 16%, '법정기간과 동일'하다는 응답은 79%로 나타남 <표-20>

<표-20> 하자담보책임기간 (건, %)

	'14. 1분기	'14. 2분기	'14. 3분기	'14. 4분기	'15. 1분기
법정기간보다 길다	15 (22)	16 (25)	21 (32)	14 (19)	10 (16)
법정기간과 동일	38 (55)	49 (75)	45 (68)	58 (88)	49 (79)
기타	16 (23)	0 (0)	0 (0)	1 (2)	3 (5)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4%가 미수령하는 것으로 응답함<표-21>. [미수령 사유]로는 대부분 '하도급대금 직불 현장(38%)'과 '이유를 알 수 없다(41%)'였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종전과 달리 '수급인이 보증면제업체(21%)'라는 응답비중이 높아짐<표-22>

<표-2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수령여부 (건, %)

	'14. 1분기	'14. 2분기	'14. 3분기	'14. 4분기	'15. 1분기
있다	31 (43)	32 (50)	31 (45)	41 (56)	35 (56)
없다	41 (57)	32 (50)	38 (55)	32 (44)	28 (44)

<표-2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미수령 사유 (건, %)

	'14. 1분기	'14. 2분기	'14. 3분기	'14. 4분기	'15. 1분기
수급인이 보증면제업체	(8)	3 (7)	6 (13)	0 (0)	5 (21)
하도급대금 직불현장	(38)	23 (51)	23 (50)	20 (65)	12 (38)
계약금액 1천만원 이하	(8)	2 (4)	4 (9)	3 (10)	2 (0)
이유모름	(46)	17 (38)	13 (28)	8 (26)	13 (41)

-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하자보증서 발급기관]으로 서울보증보험을 강요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10%<표-23>, [수급인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율 10% 초과]를 강요받은 응답은 없었으며<표-24>,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율 5% 초과]를 강요받은 응답은 2%였음 <표-25>

<표-23> 서울보증보험 강요 유무 (건, %)

	'14. 1분기	'14. 2분기	'14. 3분기	'14. 4분기	'15. 1분기
있 다	9 (12)	10 (15)	6 (9)	8 (11)	6 (10)
없 다	63 (88)	56 (85)	63 (91)	66 (89)	55 (90)

<표-24> 하도급계약이행보증율 10%초과 강요 (건, %)

	'14. 1분기	'14. 2분기	'14. 3분기	'14. 4분기	'15. 1분기
있 다	3 (4)	3 (5)	4 (6)	3 (4)	0 (0)
없 다	69 (96)	60 (95)	63 (94)	70 (96)	61 (100)

<표-25> 하자보수보증율 5%초과 강요 (건, %)

	'14. 1분기	'14. 2분기	'14. 3분기	'14. 4분기	'15. 1분기
있 다	2 (3)	7 (11)	2 (3)	6 (9)	1 (2)
없 다	68 (97)	55 (89)	62 (97)	65 (92)	60 (98)

- [원도급자의 무리한 하자보수 요구]는 무려 응답 업체의 18%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표-26> [산업재해발생시 공상처리 경험]은 없었던 것으로 응답함 <표-27>

<표-26> 원도급자의 무리한 하자보수 요구 (건, %)

	'14. 1분기	'14. 2분기	'14. 3분기	'14. 4분기	'15. 1분기
있 다	11 (15)	11 (17)	15 (23)	12 (16)	11 (18)
없 다	60 (85)	52 (83)	50 (77)	63 (84)	51 (82)

<표-27> 산업재해 발생시 공상처리 경험 (건, %)

	'14. 1분기	'14. 2분기	'14. 3분기	'14. 4분기	'15. 1분기
있 다	5 (7)	5 (8)	4 (6)	3 (4)	0 (0)
없 다	65 (93)	58 (92)	62 (94)	70 (96)	61 (100)

-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불공정거래의 구체적 피해사례를 종합한 결과 <표-28>과 같이 부당한 공사비 감액과 공사원금 및 증액분의 미지급, 과도한 하자책임전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표-28> 불공정거래의 구체적 피해사례 (1분기 집계)

불공정거래의 발생단계	불공정거래 사례
발주자/원도급자	- 건설공사를 물품납품/자재구매로 발주 - 민간입찰 공동주택의 경우 내정된 특정업체를 위한 입찰공고
공사수주 및 계약단계	- 하도급율보다도 낮은 공사금액으로 계약을 강요 - 건설공사가 아닌 물품납품/자재구매로 계약을 요구 - 원도급사가 특정인을 시공에 참여토록 한 뒤 관련 비용 전가
시공단계	- 설계내역서에 없거나 임의변경한 공정을 시공/재시공 유도 - 불가피한 공사비 증액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증액불허 - 원도급사의 현장경비 등을 모두 하도급사에 전가 - 타 공정에서 비롯된 하자를 공동보수토록 강요
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단계	- 공사대금의 지연지급,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 추가공사 등의 공사대금을 미지급(공사비에 미반영) - 무리한 하자요구를 내세워 공사비 삭감을 요구 - 불합리한 공사대금 삭감 -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보수요청

